

화해허가신청 공고

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7585, 2014가합100086(병합), 2014가합100093(병합) 증권관련집단소송

원고(대표당사자) : 김지운

피 고 : 1. 장철
2. 유왕돈
3. 주식회사 진매트릭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7585, 2014가합100086(병합), 2014가합100093(병합)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원고(대표당사자)와 피고들로부터 재판상 화해허가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공고합니다.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은 서면으로 화해허가신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4조 제2항)

1. 총원의 범위

‘소송허가결정 고지서’ 참조

2. 화해의 이유

원고(대표당사자)를 포함한 총원은 손해를 온전하고 신속하게 보전받고, 피고 주식회사 진매트릭스(이하 ‘피고 진매트릭스’라 함)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회사로서의 대외신인도를 고려하여 경영상 불안요인을 조속히 해소하는 한편, 피고 장철, 유왕돈은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화해에 이르게 되었다고 원고(대표당사자)와 피고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3. 원고측에 지급될 총 금액 및 지급방법(화해의 내용)

가. 지급총액

피고들이 총원에게 지급할 총 금액은 15억 원으로 합니다.

나. 지급방법, 지급기일 및 지연손해금

화해금은 피고들이 전액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되, 지급의 편의상 피고 진매트릭스가 이 사건 화해허가결정이 있는 날 이후로서, 소송허가결정의 확정 이후 진행되는 제외신고기간 만료 후 1주일 이내에 화해금 전액(마.항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

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하고 난 금원)을 원고(대표당사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합니다. 피고 진매트릭스가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액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들은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위 지급주체 및 지급기한 등은 당사자가 화해허가신청서에 기재한 것으로서 향후 이 법원의 화해허가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손해액의 산정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총원이 시세조종기간 중 유통시장에서 피고 진매트릭스의 주식을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취득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선입선출법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산정된 총원 1,342명에 대한 손해액은 합계 3,590,522,310원입니다.

라. 화해금의 산정

피고들이 총원에게 지급할 화해금은 위 손해액 합계 3,590,522,310원의 약 41.8%에 해당하는 15억 원입니다.

마. 제외신고자의 처리

제외신고를 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피고들은 원고(대표당사자)에게 위 화해금 15억 원에서 제외신고자의 손해액이 원고 주장 손해액 합계 3,590,522,310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4. 변호사 보수

착수금은 0원으로 하고, 피고들이 지급한 화해금에서 23%(부가가치세 별도)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5. 분배의 기준 및 방법 등

가. 각 구성원에 대한 지급금액은 피고들이 지급한 화해금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원고(대표당사자)가 주장하는 전체 손해액에서 해당 구성원의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분배합니다.

나. 원고(대표당사자)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신청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6. 화해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의 일시 및 장소

2019. 1. 18. 11:00 서울남부지방법원 416호 법정

7.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주소·연락처 및 문의방법

변호사 변환봉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08, 601호

(전화번호 : 031-731-7800, 팩스번호 : 031-733-0090)

2018.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재판장 판사 신혁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참여관 조민정

전화 : 02-2192-1222, 팩스 : 02-2646-7153